“도제 권리제한, 탈종단 가속화 부작용만”

연좌제 논란 ‘도제 권리제한’ 완화될까

선학원정상위, 10월 12일 공청회
“권리제한 해제 타당” 한 목소리
“입법 취지와 달리 실익은 없어”

교육원도 “개정논의 환영”입장
“권리자 · 관리자 확대” 요청도
주경 스님 “순차적 추진” 약속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는 10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도제 권리제한 완화를 위한 법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조계종이 현재 시행 중인 미등록법인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 조치는 애초 ‘법인관리법’에 근거해 종단 등록을 통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였지만, 오히려 탈종단화를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미등록법인 · 사암에 대한 권리제한 조치가 관리자 · 권리자를 넘어 도제 스님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여론이 확대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이에 대한 종도들의 여론을 모으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스님들은 “법 개정을 통해 도제 권리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으며, 나아가 “도제를 넘어 관리자와 권리자에까지 폭을 넓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금곡)가 10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도제 권리제한 완화를 위한 법개정 공청회’는 11월 중앙종회 정기회를 앞두고 미등록 사설사암 · 법인의 권리인, 관리인의 도제권리를 제한하는 ‘법인관리법’ 등 관련법의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조계종과 오랜 갈등을 빚어 온 재단법인 선학원 문제가 핵심사안인 만큼, 선학원 도제 비율이 높은 비구니 스님들의 관심이 높았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 상임위원장 주경 스님은 발제를 통해 법인법 제정의 역사와 입법취지를 짚고 그동안 제기돼 온 개정 여론을 밝혔다. 주경 스님에 따르면 법인법은 2013년 처음 제정돼 2014년 구체화됐다. 애초 삼보정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따라 미등록법인 · 사찰에 대한 종단등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특히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탈종단 행보를 강화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사찰의 유지와 조계종 승적 중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본의 아니게 탈종단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토론자로 나선 심원 스님(선학원미래포럼)은 권리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 “적극 찬성”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선학원 도제는 곧 조계종으로 출가한 스님이며 △권리제한은 현대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연좌제’로서 적법하지 않고 △권리제한을 처음 시행했던 취지에서 볼 때 실익이 없다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승려교육을 총괄하는 조계종 교육원 역시 개정안에 대한 환영입장을 명확히 했다. 교육부장 서봉 스님은 “미등록법인 및 사찰의 도제들이 교육과 수행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법과 승가고시법 개정뿐 아니라, 승려연수교육 및 안거 등 권리제한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백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히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이 강하게 피력됐다. 전국비구니회 소속 비구니 스님 6000명 가운데 10%가 선학원 도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 현진 스님(선학원정상화추진위 소위원회 위원)은 “대다수 선학원 도제들이 조계종으로 출가해 종단에서 교육받고 종단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출가 당시는 물론, 조계종과의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는 조계종과 선학원이 다르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며 “은사 스님이 종단에 미등록했다는 이유로 도제들이 권리를 제한 받는 것은 명백한 연좌제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제들에 대한 권리제한 완화를 넘어, 분원장 등 권리자 · 관리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대해 주경 스님은 “도제들에 대한 권리제한 조치가 법개정으로 현실화된다면, 이후부터는 권리인과 관리자로 확대조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학원 폐쇄적 운영 · 횡포, 막을 방안 있나



정인진 변호사, 법적방안 모색

사자상승 · 종교법인법 등
설립정신 회복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해결방안은 없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최근 정관상 자격 없는 성범죄 전력의 前 이사장 법진 스님을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함에 따라, 선학원 탈종단화와 폐쇄적인 운영 심화에 따른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 정인진 변호사가 선학원의 문제점의 짚고, 초기의 설립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고찰했다.

정인진 변호사는 10월 12일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학술연찬회에서 ‘선학원 초기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입법론 등의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근래 들어 선학원은 조계종과 절연하고 자신을 독자적 종단에 가까운 조직으로 바꿔 나아가고 있다”며 “또 재단법인의 법적 운영법리에 기대어 이사회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속 사찰과 승려, 단위종교단체 등에 대한 자의적 처분과 횡포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불교단체든 다른 단체든 재단법인 이사회가 어떤 인물의 독재적 지배 아래 놓이거나, 혹은 폐쇄적 운영에 빠질 때 운영에 대한 견제방법이 없다”며 “특히 이런 상황은 후임 이사도 이사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폐쇄상을 낳는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선학원이 초기 설립정신을 회복하고 이사회의 일탈행위와 전횡에 대한 유효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찰한 정 변호사는, 그 방안으로 선학원 설립에 관여한 조계종이나 사찰 또는 승려가 △불가에서의 사자상승 종법 △설립자로서 권리나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과 △국가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선학원 운영을 바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짚으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애초 이사회가 설립취지에 위배된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이를 견제하거나 이사회 구성을 바꿀 수 있는 기관이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며 “다만 재단에 소속된 사찰 또는 개인은 이사회 의결에 대해 그 효력이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우, 예를 들어 사고사찰 지정의 결의, 창건주 권한 박탈의 결의 등에 대해서는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통문화 보존 · 관리에 노력해 달라”

원행 스님, 김대현 종무실장에 당부



김대현 문체부 종무실장이 10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날 김 종무실장에게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불교 현안들을 잘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중요한 자리에 소임을 맡아 책임이 크다”며 “소중한 문화재와 성보들이 잘 보존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전통문화 보존 관리를 위해 현안과 사업 예산 등 전반적인 부분을 잘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김 실장은 종립학교인 보문중고를 졸업했으며, 문체부와 문화재청, 세계관광기구 등을 오가며 정책경험을 쌓은 문화행정 전문가로 알려졌다.

자리에는 총무부장 금곡 스님, 기획실장 삼혜 스님, 문화부장 성공 스님 등이 배석했다. 송지희 기자

문화재 관람 ‘통행세’ 매도에 반발 확산

정청래 발언에 사과촉구
종회의장단과 해인사 등
잇따라 비판성명 발표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매도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중앙신도회 등이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10월 12일 중앙종회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종단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중앙종회는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라고 지칭하는 등 마치 사찰이 국민들에게 ‘통행세’를 갈취하는 사기꾼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국가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자, 문화와 관련한 정책과 법안을 입안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입법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이라면 그 책임을 불교계에 전가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기 전에 국가적 차원의 문화재 보호정책과 민족문화 계승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폄하하고 사부대중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도 10월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치 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를 떳떳하지 못한 부정행위로 매도하고 불교계 전체를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신도회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국립공원 지정의 근거인 공원법 제정에 앞서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징수해 왔다”며 “오히려 일방적인 국가행정으로 온갖 비난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던 것은 불교계였으며, 전통사찰들이 국립공원에 강제 편입되면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사찰 운영과 보존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불자들은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사실을 바로잡고 사찰을 비롯한 불교계 전체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정청래 의원에게 이 발언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와 해인사신도회는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해인사를 봉이 김선달로 왜곡하고 매도했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해인사는 “정 의원은 ‘문화재관람료’를 ‘사찰입장료’로 잘못 알고 사찰 통행세라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찰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다”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임을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해인사는 홍류동 입구 초입부터 가야산 정상까지의 약 1000만 평에 달하는 ‘가야산 해인사 일원’ 모두가 ‘명승62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가야산과 해인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명승구역에 입장하는 것에 따른 ‘문화재관람료’를 내는 것이지 ‘해인사 사찰입장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해인총림과 해인사 교구 말사 등 해인사 교구 사부대중은 정청래 의원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10·27 법난

제41주년 추념법회

지난 1980년 10월 27일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은 군인과 경찰 등 3만여 명의 공권력이 전국 5천여 개 사찰을 군홧발로 짓밟고 2천여 스님과 불교 관계자들을 연행하고 고문한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있어서 최대의 수난사입니다.

올해로 ‘10·27법난’이 자행된 지 어느덧 4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역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 고통의 역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불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0·27법난’의 아픔을 역사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10·27법난 제41주년 추념법회’를 봉행합니다.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최대 수난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 10·27법난 추념법회 10월 27일 (수)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

문의 | 02-2011-1829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초청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합니다.
※ 추념법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